

대한소화기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
제 1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"대한소화기학회 편집위원회"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우수한 대한소화기학회지 간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운영목표)

제 1항: 대한소화기학회의 공식 간행물인 대한소화기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소화기학의 발전에 기여한다.

제 2항: 국내외로부터 투고 받은 논문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게재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한다.

제 3항: 국내외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, 이를 통해 회원들의 소화기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.

제 4조 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약간 명, 간사 약간 명과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항: 위원장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은 대한소화기학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제 2항: 부위원장,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항: 위원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으로 소화기학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 4항: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5조 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화기학회가 정한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.

제 6조 (임무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
제 1항: 학술지 간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2항: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.

제 3항: 대한소화기학회지는 매월 1회, 연 12회 발간한다.

제 4항: 대한소화기학회지는 매월 25일 발행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및 구독자에게 우편 혹은 전자메일로 발송한다.

제 5항: 대한소화기학회 논문상 후보 논문 선정 및 추천을 담당한다.

제 6항: 기타 간행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7조 (회의) 본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
제 1항: 정기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2항: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8조 (부칙)

제 1항: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 2항: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.

개정: 2015. 03. 24

개정: 1982. 05. 08

개정: 2004. 11. 18

개정: 1979. 11. 27

개정: 2002. 02. 19

개정: 1975. 11. 21

개정: 2000. 11. 01

개정: 1974. 11. 10

개정: 1999. 11. 11

개정: 1971. 03. 30

개정: 1998. 09. 23

제정: 1961. 10. 27

개정: 1991. 07. 19